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6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정춘생 · 김재원 · 최혁진
강경숙 · 이해민 · 서왕진
백선희 · 신장식 · 김선민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

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10·29이태원참사의”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2조제1항 후단 중 “지원금”을 “보상금 및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원금”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원금”을 “보상금등의 지급여부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원금액”을 “보상금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제61조의3(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금등”을 “보상금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 ----- ----- -----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u>공무원은 제외한다</u>)	1) ----- ----- ----- ----- <u>공무원을 포함한다</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u>1년</u>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 ----- <u>2년</u> ----- -----.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신설>

3. ~ 5. (생략)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

②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 5. (현행과 같음)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

-----.

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보상금 및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② -----
-----보상금등-----

-----.
-----.

③ -----

-----보
상금등의 지급여부 및 금액-----.

-----.

④ -----

-----.

-----보상금등의 금액-----

다.

⑤ · ⑥ (생략)

<신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

--3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신 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제61조의3(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보상금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 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